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13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 박수현·허성무·윤종오

이개호 • 한정애 • 김윤덕

조인철 · 양부남 · 조계원

윤후덕 • 박용갑 • 이건태

신영대 · 이연희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6 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임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임명 권한의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출 또는 지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이므로 재판관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국가기관등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법치주의 질서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

록 하여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80조 신설).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6호"를 "제2항제6호 및 제7호"로, "사람"을 "사람 및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한다.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 선거운동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⑥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0조(벌칙)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아니한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판관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③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4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				
분을 상실한 날부터 <u>3년</u> 이 경	<u>5년</u>			
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6			
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의 역할을 한 날부터 <u>3년</u> 이	<u>5년</u>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u><신 설></u>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 선			
	거운동을 한 날부터 5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u>제2항제6호</u> 에 따른 자문이	③ 제2항제6호 및 제7호			
나 고문의 역할을 한 <u>사람</u> 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	사람 및 선거운동을 한 사람			

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 / 7 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 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 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② ~ ⑤ (생 략) <신 설>

(생 략) <신 설>

제6조((재판관	<u></u> 일	임명)	1 -	
					 _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 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 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 관을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 장의 지명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 으로 본다.
-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②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신 설>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 한다.

제80조(벌칙) 제75조제4항을 위반 하여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 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 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헌 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다.